

# 제415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 (임시회)

제 2 호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4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5)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0)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7)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3)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7)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1)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5)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6)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2)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8)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5)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4)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실시의 건(추가)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 2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0) ..... 3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8) ..... 3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5) ..... 3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7) ..... 3

---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0) .....	3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7) .....	3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3) .....	3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7) .....	3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1) .....	3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5) .....	3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6) .....	3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2) .....	3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8) .....	3
1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5) .....	3
1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4) .....	3
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	3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0
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실시의 건 ..	10
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 .....	10

---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셨습니다. 또한 과방위의 국민의힘 간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 예정인 법률안들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계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시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회의에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 1.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1조 및 제58조에 따라 2024년 6월 18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부위원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제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2024년 6월 18일 오전 10시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2024년 6월 18일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 현안질의 회의장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의 건이 상정됨을 공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현안질의 관련자에 대하여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0)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8)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5)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7)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0)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7)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3)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7)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1)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5)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6)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2)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8)
1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5)
1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4)
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11시03분)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속여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시급한 방송 관계 법률의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이훈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의원**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주주로 하는 문화방송을 두고 방송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와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민주주의의 한 축인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송 3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을 통해 방송편성규약 준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방송편성규약이 정치적으로 선임된 경영진을 통해 일방적으로 무시되거나 언론을 탄압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KBS에서는 세월호, ‘역사저널 그날’ 등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방송 협업자들이 정상적으로 방송 업무에 임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특정 사안을 메인 뉴스에 23분이나 검증 없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노조법에서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단체협약을 사측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편성규약이 사적 협약이라 하더라도 사측과 노측 간 강제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에 이행강제력을 두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법률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사 추천에 있어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21명을 추천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국회의 추천 봉을 5명,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6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봉을 4명, 방송 전문성과 방송보도·제작·기술 등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공사 사장 추천 및 임명제청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국민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되고 사추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여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을 개정하여 공포 즉시 법률을 시행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치적인 영향력 가운데 있던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임기를 종료하되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와 경영진이 선임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자의 최소한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공영방송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이사 및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한 뒤 새로운 이사 및 경영진 선임 절차를 수행

한다면 초기 일부의 이사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이사 추천과 시민이 추천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 즉시 기존 이사진의 임기를 종료케 하고 새로운 법 취지에 맞게 이사 및 사장을 선임하게 한 것입니다.

다양한 여론 형성과 건강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 공적 책무를 다하고 정치적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며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동영 위원님 인사말씀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동영 위원 정동영입니다.

지각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과학기술 또 정보, 방송통신, 앞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 예산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22대 국회에서 과방위가 최고의 위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예감을 합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과—위원장 되신 것 축하하고요—최초 인연은 5공 보도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86년 9월 한국일보에 있던 제 동창생이기도 하고 동료 기자였던 김주언 기자의 제보로 월간 ‘말’ 지, 그때 최민희 위원장이 월간 ‘말’ 지 기자였습니다. 보도지침을 특집호로 폭로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실상을 온 세상에 드러냈지요.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 방송 장악, 언론 통제의 현실 속에서 보면 매우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지침에, 옛날 얘기라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를 ‘가’, ‘불가’, ‘절대불가’ 이렇게 나누고 예컨대 YS·DJ 동정은 보도하지 말 것 그다음에 정부 비판 외국의 논평은 쓰지 말 것, 학생 시위는 몇 단 크기로 내라 또 사진은 군중이 많이 모인 것은 쓰면 안 된다, ‘독재’, ‘군부 독재’ 이런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 고위 공무원과 경찰의 비리는 작게 취급해라 이런 등등입니다.

민주주의 척도는 언론자유지수하고 비례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이제 성숙된 단계에 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거꾸로 와 버렸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과방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

했던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다시 발전시키는 데 동료 여러분과 함께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건의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위원회 대안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입법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중 최민희 의원님 안에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직능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임직원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추천하도록 한 것과 사장추천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한 것은 재의 요구 사유를 일부 반영하여 다시 재의 요구될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과반 이상의 대표성 단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이 경우의 추천 방안으로 과반수 미만의 단체들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오늘 방송법 등의 법안 상정을 어제 공지했고 우리 과방위 행정실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법안들이 대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마땅히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행정실로부터 최종적으로 방통위원장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지난번 법사위 법안 상정 때 법무부장관이 나오지 않더니 오늘 과방위에도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이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체토론 5분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5분 괜찮겠습니까?

○김현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밝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법안 내용 자체로 다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그 부분도 검토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고 또 그것 이외에 46조 3항의 1호와 2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 같은 경우에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국회의 의석 비율을 과연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러 경우의 수를 저희 의원실에서 검토를 해 봤고요, 짹수로 하는 것이 의석 수를 비율대로 반영하는 데 합리적이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호가 5명이 아니라 6명으로 돼야 지금 현재 국회의 의석 비율을 반영하는 데 조금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2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주체로서 방통위가 선정하는 학회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최민희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신 내용 보면 그냥 방통위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법안에 명기해 놨습니다. 활동 기간, 활동 내용 그리고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은 반영이 꼭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방심위가 선방심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그런 물상식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새로 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 이미 저희가 한 번 겪었던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노종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오늘 올라온 법률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특히 부칙 조항 변경한 부분이랄지 MBC 등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 및 해임 요건 강화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 오늘 제가 이쪽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나, 우리가 방송 3법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관행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 위원 교체 그리고 방송사 사장 해임 그리고 친정부 낙하산 사장 투입, 친정부 간부 인사로 교체, 편파 방송으로 이어지는 방송 장악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런 관행은 2008년도에 MB 정부 당시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2024년이고요. 이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관행을 만든 보수정권에서 결자해지하시는 심정으로 이 고리를 끊어 내시길 바라고요. 이 점에서 여당 위원님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통령은 저희 입법부에서 올린 것은 여당에서 발의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유 불문, 노록 패스도 아니고 노록 거부권을 일삼고 있습니다. 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출석을 하셔서 합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조국혁신당은 방통위, 방심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입법을 준비하고 관련 법안들도 빠르게 처리되고 상정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법안 중에 부칙에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이사 및 사장의 임기 관련해서 이 법 시행과 더불어 기존의 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종료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법안에는 이게 빠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입법 취지라든가 그리고 과거와의 어떤 단절 문제 그리고 기존의 이사가 9명, 11명에서 21명으로 늘면서 새로운 이사 선임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도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단절을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칙에 이사 및 사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은 좀 면밀히 논의를 해 갖고 어느 내용이 합리적인지 명확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방송편성규약 준수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편성규약을 지켜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머리를 좀 짜내야 될 텐데, 그런 논란이 사라질 방안들을 찾는 데 다 함께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얹혀서 편성규약 이 부분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도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국회의원들이 무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23년 기준 24.7%로 대한민국 정부기관 중 꼴찌였습니다. 뽑아 줬으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께, 부모님께 혼나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뽑은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은 총선 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손놓고 구경하지 말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하루빨리 상임위에 참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방위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혼들리는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언론 환경을 기필코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아서 2인 체제의 기형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도 닦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AI 시대 반도체 패권이 대만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 주권을 옥죄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자국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와 AI 등 과학기술 발전은 나날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떤 국가 전략이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과기부 등 관계 부처 기관장들, 오는 18일 전체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서 국민 앞에 국정계획과 비전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특히 오늘 안건으로 다뤄진 방송 4법,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개혁으로 나아갈 첫걸음입니다. 공영방송 KBS와 MBC, E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 저는 신청 안 했는데요.

○위원장 최민희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편성규약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 경영진의 권한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시아경제 기사를 참고했는데 아시아경제 기사를 제가 봤더니 이것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토보고서에 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편성규약 관련해서 공영방송, 특히 언론사가 일반 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편성규약이나 그리고 저도 언론사에 있었지만 공정방송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체계적으로 세부화돼서 그걸 규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건데 이런 관련 법이나 규정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잣대를 들어대서 본다는 건 저는 기본적인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방위, 전문성이 있는 과방위 차원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우리가 편성규약이 들어가는 부분도 이런 큰 틀에서 방송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방송이 왜 존재하는지, 방송의 독립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방송 3법을 만드는 취지가 무엇인지 이런 걸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좀 전에 이훈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번 방송 3법과 방통위법 처리의 시급성이랄지 여러 당위성 부분들을 많은 논의를, 이미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논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를 했고,

일단 이사 수랄지 이런 부분들도 21대 때 방통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된 법안이, 국회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까지 됐는데, 그 취지와 방향성을 살리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의견들 주시는데, 방송편성규약도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사와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랄지 여러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견이 모아진 대로 여러 의견을 주시되 원안대로 처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을 내지 않으신 박민규 위원님 그리고 조인철 위원님, 혹시 의견 없으실까요?

○박민규 위원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29분)

○위원장 최민희 오늘 준비한 안건은 마무리되었으나 저희가 위원님들께 안건 추가 상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개최의 건과 청문회와 관련한 중인 채택의 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이 안건들을 추가 상정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실시의 건

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

○위원장 최민희 이의가 없으시면 입법청문회 개최의 건과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6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장과 사무처장·방송정책국장, 3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과 추가 안건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안질의와 법률안 심사를 안건으로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꼭 출석하시기를 거듭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증인 명단

증인(3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2024. 6. 21.(금) 14: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정부 측 의견 청취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이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출석 위원(11인)

김현 노종면 박민규 이정현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황정아

### ○첨가 위원(1인)

이준석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서덕교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2)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5. 3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024. 5. 31.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0)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6)

###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24. 5. 31. 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071)

###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24. 5. 31. 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072)

###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2024. 6. 3. 이해민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076)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2024. 6. 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4. 6. 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8)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2)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3)

###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2024. 6. 4. 황정아 의원 등 57인 발의)(의안번호 2200109)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0)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6)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이상 36건 6월 11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4)

6월 12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5)

이상 8건 6월 1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1. 이현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2024. 5. 31.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5)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4. 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이상 4건 6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1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8)

6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고서 송부****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2024. 5. 30. 감사원장 제출)

**2024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이상 2건 2024. 5. 31.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이상 3건 6월 11일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대통령령	제34108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10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103호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104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105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106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17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23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374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328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대통령령	제34425호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45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457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50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제12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제12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제124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제125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제12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42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3429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343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34449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34533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3425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령	제34449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제194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제1952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제195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위원회
부령	제12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정사업본부